

企業構造調整의 支援을 위한 立法의 推移와 評價

李 哲 松*

I. 머리말

97년 하반기에 맞이한 세칭 IMF事態라는 經濟危機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해결책을 모색하여 왔다. 이번의 經濟危機는 기업의 對內外 支給資金의 不足이라는 현상으로 표현된 바이므로 위기의 극복이란 바로 倒産에 직면한 企業들을 再建하고 도산사태가 여타 기업들에 확산되는 것을 예방함을 뜻한다. 企業의 再建이나 倒産의 防止를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투입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資源의 配分과 使用을 효율화하는 것도 새로운 자원의 투입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업에는 과거부터 組織 및 運營構造에 자원의 배분과 使用의 非效率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되어 온 바이다. IMF 등 우리의 채권자인 國際金融機關도 같은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構造調整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부의 IMF 극복책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업도 반자율, 반타율로 이에 추종하였다. 그간 선보인 각종 構造調整方案중에는 소위 『빅딜』과 같이 法的 根據없이 行政指導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나, 새로운 立法의 支援을 받아 企業의 法的 構造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이용되었다.

그간 동원된 구조조정방법은 그 목적을 기준으로 보아, 1) 재무구조가 고도로 악화된 기업의 財務構造를 자생적으로 改善시키는 방법, 2) 기업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企業單位를 統合, 分割하는 등 조직을 再編하는 방법, 3)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타기업의 존폐에 의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企業運營의 獨立性을 제고하는 방법, 4) 기업의 경영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企業의 支配構造를 改善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그리고 IMF사태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가장 컸던 金融機關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령정비는 정부의 구조조정작업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다.

* 漢陽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이중에는 비교적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미진하거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재고를 요하는 것도 있다. 아직 우리 경제에는 난관이 남아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 따라서 企業의 構造調整은 상당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 입법된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된 점을 짚어 봄으로써 앞으로의 構造調整 관련 立法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II. 財務構造의 自生的 改善

1996년말의 증권거래법개정과 1998년말의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으로 인하하고 株式分割을 용이하게 한 것도 기업의 資金調達에 機動性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상법 제329조제4항, 제329조의2),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額面未達發行의 制限緩和

회사가 주식을 액면미달의 발행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거치고 法院의 認可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상법 제417조), 주가가 액면가를 하회하더라도 時價대로 발행하는 예는 단 몇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전히 액면가로 발행하고 大株主가 引受하는 것이 통례이다. 97년하반기 이후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額面未達의 株式이 속출하는 반면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므로 額面未達發行을 용이하게 하고자 98년말 證券去來法改正을 통해 상장법인에 법원의 인가를 구함이 없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만으로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액면미달발행시의 발행가결정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야야 공표 되었으므로 새제도가 얼마나 활용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주주들이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해 자기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액면미달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액면미달발행, 즉 低株價에 적응하는 시가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無額面株式制度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능동적인 방법이다.

무액면주식제도의 長點은 단지 액면미달발행을 쉽게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企業의 財務管理를 보다 탄력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다만 우리 상법이 보수적으로 견지하고자 하는 資本充實의 원칙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된다는 조건하에서 이같은 제언을 하는 것이다.

2. 資産流動化法

97년 경제위기로 금융기관의 貸出債權이 상당수 不實化되고 이것이 金融機關의 不實化로 이어지자,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새로운 金融商品으로 流動化시켜 금융기관의 운용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98년 9월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법률 제5555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해 유동화의 추진주체가 되는 流動化專門會社는 자산의 1회적인 유동화에만 기여하는 限時的인 會社이므로 장기적인 주택자금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주택자금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99년 1월에 다시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을 제정하였다. 이 두 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財務構造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 流動化制度의 활용이 활발한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담보의 대종을 이루는 根抵當權이 流動化資産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마저 노정되어 조속히 보완입법이 따라야 할 실정이다.

3. 債權의 出資轉換

97년이후 허다한 기업들이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고 개중에는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기업도 적지 않아, 채권자 특히 채권은행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어차피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出資轉換이 企業과 債權者의 共生을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채무기업과 채권은행간에 타협이 이루어진 예를 볼 수 있고 정부도 金融機關債權의 出資轉換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稅制上의 支援도 마련해 놓은 바이다.

그러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있어 출자당사자들은 實務的인 難關에 봉착하고 있다. 債權出資의 가장 간단한 법기술적 방법은 채권자가 인수하는 株式의 納入代金과 채권자가 당해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債權을 相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98년도에 大法院이 회사등기에 관한 새로운 質疑回信(대법원행정

처장 질의응답 1998. 6. 23 등기 3402-559)을 발하여 債權과의 상계에 의한 株金納入方法을 株金納入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變更登記를 각하하겠다는 태도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株主는 納入에 관하여 相計로서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는 상법규정(상법 제334조), 그리고 주금은 납입금보관은행에 납입하여야 하고, 자본금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보관은행이 발급한 納入金保管證明書を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는 상법 및 非訟事件節次法の 규정 때문이다(상법 제318조제1항, 제425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제11호, 제205조제5호).

이러한 登記의 制限 때문에 채권을 出資轉換할 때에는 채권기관이 우선 금전으로 납입하고 그 금전으로 債權을 변제받는 우회적이며 債權者로서는 다소 위험이 따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상법상의 株金의 相計禁止는 會社와 債權者의 合意에 의한 相計는 허용된다는 해석론으로 극복할 수 있고, 등기시에 納入金保管證明書を 첨부하게 되어 있는 제도도 法改正에 의한 해결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다가, 無償株의 발행시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 없이 登記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고, 과거 이른바 8·3조치에 의한 債權의 出資轉換時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 없이도 登記를 받아 준 前例도 있어, 현행 비송사건절차법하에서도 合目的的인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債權의 出資轉換이라면 기업과 채권자간의 大勇斷과 妥協의 산물로서, 會社와 다른 會社債權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 만큼, 이같이 중요한 實質問題가 해결된 마당에 登記라는 節次問題로 채권의 출자전환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III. 組織再編

97년 위기 이후 기업의 조직개편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빈번히 활용된 방법은 合併, 營業讓渡, 企業分割이다. 부실기업의 破産으로 인한 충격을 막고자 부실기업을 동종 또는 유사업종기업에 吸收合併시켰으며, 기업의 산만한 영업을 정리하고 專門業種을 정예화하는 한편, 자체 資金調達의 방법으로 營業을 양도하였던 것이다. 영업양도중에는 자사와 무관한 기업에 營業을 양도하고 金錢으로 對價를 수령하는 순수한 의미의 營業讓渡도 있었지만, 영업에

대한 支配權을 유지한 채 분리운영할 목적에서 子會社를 설립하고 이에 영업을 양도하는 企業分割의 예도 많았다. 그리고 종래 자체에서 공급해 오던 기업의 生産要素를 外部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그 관리조직을 기업에서 제거하는, 이른바 아웃소싱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같이 합병과 기업분할의 필요성이 빈번해지자, 合併과 企業分割에 관한 法的 節次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규의 준수에 따르는 費用을 절감시킴으로써 조직개편이 필요한 기업의 合併, 分割을 장려할 목적에서 98년 商法 및 稅法에서 합병, 분할에 관해 대폭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기는 다소 다르나 종래 公正去來法에서 持株會社를 금지하던 것을 99년 2월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허용을 폭넓게 허용하게 되었다. 이하 관련 입법사항의 개요를 설명한다.

1. 合併에 관한 法改正

98년말의 상법개정에서는 합병에 관해 대폭적인 개정이 없었다. 構造調整의 支援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債權者의 異議提出期間을 2월에서 1월 줄이고, 小規模合併의 경우 株主總會와 株式買受請求節次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둔 정도이다(상법 제527조의5, 제527조의3).

하지만 法人稅法상의 合併稅制에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종전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하는 合併評價差益을 益金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98년말의 改正法人稅法에서는 평가차익중 土地, 建物の 評價差益은 다시 損金에 산입시켜 평가차익으로 인한 稅負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減價償却 또는 賣却時에 평가익을 실현시켜 課稅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44조제1항). 이같이 함으로써 부동산의 비중이 큰 회사를 吸收合併할 경우 稅負擔 없이 評價益을 일으켜 財務構造를 改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 개정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移越缺損金을 승계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財務構造가 열악한 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생기는 財務構造上의 損失을 세부담의 감소로 전보받을 수 있게 되어 역시 합병의 유력한 유인동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합병에 관한 법개정을 하면서 중대한 立法的 未備點을 놓친 것이 아쉽다.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합병을 할 경우 이에 反對하는 株主에게 株

株式買受請求權이 인정된다(상법 제522조의3제1항). 주식매수란 實質的인 資本減少로서, 주주에게 資本을 還給해주는 제도인 만큼 會社債權者의 保護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株式買受請求權은 債務의 상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이 점에 대한 배려가 없다.

株式買受價格이 정확히 주식의 純資產價値와 일치한다면 이론상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별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예상되나, 주식매수는 회사의 現金資產으로 하여야 하므로 지급능력이 減少하므로 회사채권자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더우기 최근의 買受請求의 실례를 보면, 대개 매수청구시점의 時價에 4.50%가 增額된 가액에서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수청구당시의 시가가 그 시점에서의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買受請求株主는 실제의 자산가치를 절반가량 상회하는 가액으로 出資金을 回收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본이 전액 잠식된 회사마저 주식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회사법상의 가장 소중한 법리인 債權者保護를 무색케 하고 있다.

構造調整으로 合併하는 회사는 거의 도산위기에 임하여 回生方法으로 합병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現金資產의 社外流出을 감당하여야 한다면 構造調整을 無益하게 하고 나아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道德性的의 문제를 야기한다.

원래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두려면 債權者保護裝置를 선행시켜야 하나, 우리 증권거래법이나 상법에서는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債權者의 保護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株式買受請求制度는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會社分割

98년 상법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會社分割制度의 신설이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과거 회사분할제도가 없었으므로 기업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子會社를 設立하고 營業을 양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던 바이나, 분할제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기업은 企業分割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組織改編方法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분할제도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없이 입법을 서두른 탓에 여러 가지 立法的 錯誤와 未備를 보이고 있어 재차 改善이 요망된다.

분할제도의 신설과 아울러 法人稅法에 分割에 관한 稅制가 신설되었는데, 이 역시 회사분할에 대한 커다란 誘引動機를 이룬다. 과거 子會社의 설립을 통한 기업분할에 있어 장애가 되었던 것은 子會社에 이전하는 營業資産에 관해 讓渡差益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稅負擔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이었다. 法人稅法에서는 앞서 合併에 관해 소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分割時에 이전되는 資産의 讓渡差益에 관해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稅制上의 惠澤을 부여하였으므로 종전에 비해 企業分割이 크게 용이해졌다.

3. 持株會社禁止의 解除

1986년이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公正去來法”이라 약함)에서 持株會社의 設立이나 持株會社로의 전환을 금지해 왔으나(99년 2월 개정전 공정거래법 제8조), 99년 2월 개정에 의해 持株會社를 허용하였다. 持株會社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는 97년 개정전 日本 獨禁法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지주회사를 금하게 된 유래를 보면, 2次 大戰前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을 뒷받침해 주었던 財閥들이 持株會社形態로 기업집단을 이루었으므로 점령군이 財閥을 解體하는 방법으로 持株會社를 禁止하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持株會社의 해악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특히 금지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立法의 妥當性이 의문시되었던 데다가, 최근의 構造調整의 방법으로서 持株會社의 效用이 부각되었으므로 허용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97년에 持株會社禁止를 철폐하였는데 이 점도 이번 개정에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종전의 持株會社禁止의 慣性이 작용하여 지주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안을 가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必要性이 의문시되는 것도 있어 재고를 요한다.

IV. 企業의 獨立性的의 確保

1. 支配株主의 責任追窮

우리나라의 기업에는 의례 自然人 支配株主가 있어 理事에 대한 영향력을 토대로 하여 비공식적인 통로로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經營關與는 법률적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까닭에 잘못된 경영관여의 結果

에 관해서는 責任을 추궁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98년말의 商法改正에 의해 주로 支配株主를 의식하며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경영에 간섭하는 자에게 理事와 同一한 責任을 묻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상법 제401조의2). 이 규정에 의해 支配株主가 경영에 간섭하는 고질화된 경영풍토가 일시에 사라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支配株主의 經營干涉으로 인한 폐해가 노출될 경우 少額株主들이 지배주주의 責任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따라서 지배주주를 긴장시키는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相互去來 등의 制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예외없이 기업집단의 일원이다.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들은 共通 支配株主의 경영정책하에 운영되고 있어 개별기업의 自生力이 약하고 어느 하나의 기업이 倒産하면 그룹전체의 倒産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1992년이래 공정거래법에서 企業간의 相互保證을 제한하였고(공정거래법 제10조의2), 96년말의 개정에 의해 기업간의 相互去來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23조제1항제7호). 그리고 97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계열기업의 연쇄도산이 늘어나자 98년말의 改正에서는 아예 相互保證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相互保證은 기업간에 經營惡化의 波長效果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相互去來는 기업간에 利益移轉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역시 폐단이 크다. 그러므로 稅法에서는 合理性이 없는 相互去來나 相互保證에 課稅上的 不利益을 주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會社에 損失을 줄 때에는 會社法上的 責任問題를 야기한다. 하지만 상호보증, 상호거래를 公正去來法으로 다루는 것은 同法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相互去來規制條項은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기업활동에 不合理한 制限을 주고 있다. 재고할 입법이다. 상호보증, 상호거래의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라면 會社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V. 支配構造의 改善

우리나라 기업의 支配構造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면서, 주로 企業經營에 대한 監視機能의 強化와 透明性を 提高하기 위한 방법론이 거론된 바 있

었는데, 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支配構造의 改善을 재촉받아 그에 관한 입법작업이 가속화되었다.

97년 이전부터 社外理事制度의 도입론이 득세하여 96년 改正銀行法에서 은행의 경우 理事 전원의 過半數를 社外理事로 두도록 하였으며(당시 개정법 제14조의3제1항), 98년부터는 證券去來法의 有價證券上場規程에 의해 上場企業에는 理事 전원의 4분의 1이상을 社外理事로 두도록 強制하기에 이르렀다(동규정 제48조의5제1항).

그리고 역시 국제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監査制度의 效用性에 회의를 품고 미국식의 監査委員會制度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여 99년에 들어서는 商法에 監査委員會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의 社外理事란 법상의 제도가 아니고 기업이 임의로 두는 일종의 기업문화적인 소산인데, 社外理事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을 볼 때 사외이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에서라고 社外理事의 감시기능이 활발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 칭찬하기 어려운 立法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부에 두어 업무집행을 감시하게 하는 기관이고 보면, 감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獨立性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監事制度보다 나은 바 없어 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은 그에 수반하는 제반 여건과 기업문화에 달린 것이므로 기본적인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면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더우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가 理論的으로는 절대로 현행의 기업감시제도보다 나은 바 없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그 도입을 지지하기 어렵다.

VI. 金融機關의 構造調整

97년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가장 컸던 것은 금융기관이었으며, 따라서 構造調整의 압박을 가장 크게 받은 것도 금융기관이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제도적 뒷받침은 주로 두 차례에 걸친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이하 “金融構造改善法”이라 약함)의 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98년 1월 8일 및 98년 9월 14일). 同改正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金融監督委員會의 經營改

善措置의 내용을 확대, 강화하고(동법 제10조, 제12조),合併이나 資本減少를 함에 있어 절차의 신속을 기하도록 債權者異議提出期間을 단축하는 등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다수 신설하였다(동법 제5조, 제5조의2).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不實金融機關에 대한 政府出資制度가 신설되었는데,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에 관해 商法에 대한 매우 중요한 特例를 新設한 것이 주목된다. 不實金融機關은 정부 또는 預金保險公社에 出資를 요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12조제1항), 이에 의해 정부 등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理事會는 상법 제418조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株主의 新株引受權을 무시하고 신주를 배정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아울러 金融監督委員會는 부실에 관해 有責한 株主 또는 기타 특정주주가 소유하는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資本減少를 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동조제3항). 商法上으로는 자본감소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事項이나, 이 命令에 기해 資本減少를 할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만으로 할 수 있다(동조제4항).

주주의 新株引受權을 무시한 新株發行이 주주의 權利에 대한 침해임은 물론이지만, 權利侵害의 성질이 消極性을 띤 데다, 新株引受權이라는 것이 不可侵의 權利라고 보기는 어렵고 現행제도상으로도 法律(상법 제418조)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인 만큼 法律에 의한 制限 역시 가능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資本減少를 株主總會의 決議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특히 特定株主의 株式를 減少시키면서 해당 주주의 同意도 없이 金融監督委員會의 行政命令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함은 財產權의 本質인 侵害가 아닐 수 없다(헌법 제23조제1항, 제37조제2항). 이는 주주들 또는 특정주주가 資本減少를 反對함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의 正常化가 어려워지는 사태를 예상한 것이나, 이러한 사태로 자본감소가 어렵다면 經營移轉을 命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正常化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신주발행이나 자본감소와 관련하여 매우 의아한 제도가 달려 있다. 동법 제12조제7항 내지 제9항에서 본 제도에 의한 新株發行 또는 資本減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株式買受請求權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商法상 신주발행이나 자본감소를 할 경우에는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지 않는 바인데, 이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마도 株主의 新株引受權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한다는 사실 또는 株主의 同意없이

資本을 減少한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으로 株式買受請求權을 허용한 듯 하나, 정부의 출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反對株主에게 資產을 流出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동조 제3항에서는 특정주주의 株式를 無償으로 減少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는 모든 주주에게 株式買受請求權을 부여함은 모순이다. 이는 立法의 錯誤인 듯하다. 이 점을 포함하여 제12조는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할 규정이다.

VII. 餘 論

이상 과거 2년간 구조조정에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법제를 개관해 보았다. 간간히 미흡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위기라 할 만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며, 그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구조조정 작업에서 보다 중요한 대목을 놓친 감이 있다. 97년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서둘러 금융구조개선법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서두른 것이지만, 금융산업에 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모순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銀行株式의 소유제한이다.

은행법 제15조제1항은 전국규모의 은행의 경우에는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4 그리고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株主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限度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金融資源의 公평한 配分을 기하고 金融資本이 産業資本에 의해 支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둔 제도인데, 부분적으로 이러한 목적은 달성하였는지 모르나, 금융기관이 無主物로 존재함으로 인한 폐단 또한 심각하다. 그리하여 97년의 경제위기 이후 金融産業의 正常化의 일환으로 “銀行의 主人찾아주기”라는 슬로건하에 銀行株에 대한 所有制限을 철폐하는 안이 제기되었다가, 다시 財閥이 金融을 支配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자취를 감추었다. 은행에 영향력 있는 주주가 없는 탓에 그간 政府가 支配株株의 機能을 담당하여 왔는데, 설혹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은행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나은 次善이다.

97년 5월 한보사건에 관한 國會聽聞會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보에 거액의 대출을 한 모은행장을 상대로, “왜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貸出을 하였느냐”는 추궁을 하였다. 이에 대한 그 行長의 답은 가히 충격적인 것으로 “철강업은 國家의 基幹産業이므로 回收可能性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

다. 사이록처럼 이악스럽게 돈장사를 해야 할 상업은행들이 이같이 『公益的 姿勢』를 가지고 자산을 운용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누적된 병폐이며, 바로 오늘날의 金融危機와 經濟破綻을 초래한 근본원인이다.

이러한 은행관리자들의 『公益的 姿勢』는 바로 금융기관에 主人이 없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주인이 없으니, 이 所有의 空白에 政府의 힘이 스며들어 주인노릇을 대신하여 왔다. 어느 단체의 管理者들이 責任을 져야 할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그 團體의 運營의 哲學이 달라진다. 商業銀行의 관리자라면 마땅히 株主들에 대한 責任意識을 가지고 경영에 임해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政府가 主人노릇을 대신하는 터이므로 責任의 對象은 政府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銀行의 管理者들은 불필요한 公益的 使命感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은행에 있어 營利性을 무시한 경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營利性을 무시한 경영은 金融資源의 配分을 歪曲하였다. 수신자의 營利性, 나아가 債務辨濟의 可能性을 고려하여 여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취로사업에 돈을 쓰듯이 公益性爲主의 興信을 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非效率的인 용도에 資金을 낭비하는 것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결국 오늘날 企業의 不實은 따지고 보면 銀行의 所有制限에 있다고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銀行株式의 所有制限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